

승강기 정기검사 신청 안내

귀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승강기의 유효기간이 아래와 같이 만료됨을 알려드리오니 승강기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영요령 제2조(검사의 신청)의 규정에 따라 유효기간 만료일 20일 전까지 검사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, 승강기 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「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」 시행령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16조의 2에 따른 안전관리자 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자를 현장에 참석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.

(관리번호 : 100-248)

상호(건물명)	서울시청서소문별관	고객번호	4013-1805-0019-2
승강기 소재지	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(서소문동)		

1. 검사수수료

유효기간 만료일	설치장소	종류 및 형식	총수 길이	검사수수료		분동수수료	부가세
				구분	금액		
2018.05.18	별관1동-1	비상용 전기식	16	일반	140,000	0	14,000
2018.05.18	별관1동-2	비상용 전기식	16	일반	140,000	0	14,000
2018.05.18	별관1동-3	승객용 전기식	15	일반	131,600	0	13,160
2018.05.18	별관1동-4	승객용 전기식	15	일반	131,600	0	13,160
2018.05.18	별관1동-5	승객용 전기식	15	일반	131,600	0	13,160
2018.05.22	주차장-1	장애인용 전기식	2	일반	109,600	0	10,960
				소계	784,400	0	78,440
				합계			862,840

2. 총 검사 비용

구분	검사수수료	번호판수수료	분동수수료	부가세
• 검사수수료	784,400	0	0	78,440
총합계				862,840

※ [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-86호] 「승강기 검사기준」 15.19.항의 규정에 따라 '13년 9월15일 이후 승강기 번호판 부착이 의무화되었습니다. 따라서, 당 현장에 번호판이 훼손 또는 미부착된 경우 국가승강기정보센터 홈페이지(www.elevator.go.kr) 신청을 통해 발급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사장



■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[별지 제15호서식] <개정 2018.2.23>

고객번호
4013-1805-0019-2

검사 신청서

※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확인하시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 (관리번호:100-248)

접수번호	접수일자	① 처리기간 완성검사, 수시검사 : 15일 정기검사, 정밀안전검사 : 20일
------	------	--

상호(건물명) 서울시청서소문별관	대표자 성명 시장
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

검사의 종류
완성검사 [], 정기검사 [√], 수시검사 [], 정밀안전검사 []

생년월일	사업자등록번호 104-83-00469
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

사무소 소재지 (045-15) <small>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, 서울시청서소문별관 1동 14층(서울시청 총무과 별관운영팀) (서소문동)</small>	사무소 전화번호 02-2133-1611
--	--------------------------

승강기 소재지 (045-15)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(서소문동)	전화번호 02-2133-1155
---	----------------------

승강기의 종류	층수 /길이	수량	제조업체		유지관리업체		유효기간 만료일	검사 희망일
			업체명	등록번호	업체명	등록번호		
승객용(승객용)	총 15층	총 3대	오티스엘리베이터 (유)서울	611000000015	오티스엘리베이터 (유)서울	611000000001	2018.05.18	
승객용(장애인용)	총 2층	총 1대	(주)우성아이디에스 엘리베이터		(주)우성아이디에스 엘리베이터	611000000190	2018.05.22	
승객용(비상용)	총 16층	총 2대	오티스엘리베이터 (유)서울	611000000015	오티스엘리베이터 (유)서울	611000000001	2018.05.18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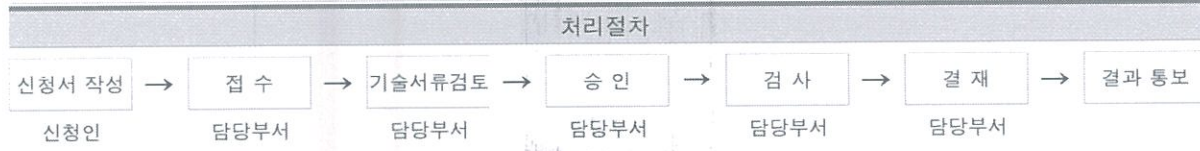
「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」 제13조제1항,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강기 검사를 신청합니다.
년 월 일
 신청인 서울시청서소문별관 (서명 또는 인)

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사장 귀하

○ 완성 또는 수시검사 신청 시 가. 검사대상 승강기의 설치도면 및 전기도면 1부 나. 안전인증 받은 승강기 부품의 목록(안전인증번호를 포함합니다) 1부 다.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술서류	수수료 「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9에서 규정한 금액 (동봉된 지로용지 참조)
--	--

유의사항

검사기관은 ①란의 처리기간까지 검사업무 처리를 완료하여야 합니다. 다만, 신청인이 희망하는 일자에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처리기간까지 처리한 것으로 봅니다. 또한 그 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(처리기간의 연장등)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.



담당본부(지사)	서울동부지사	전화 번호	02)983-6731	팩스 번호	02)988-8337
----------	--------	-------	-------------	-------	-------------

※ 검사일자는 추후 우편 또는 유선으로 통지해 드리겠습니다. **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이메일 :**

※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검사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고객님의 기밀을 임의로 외부에 누설하거나 제공하지 않으며, 고객님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있습니다. 다만, 검사결과에 관한 자료는 고객님의 양해를 구하지 않더라도 타 검사기관, 주무관청, 해당 지방자치단체, 당해 승강기(또는 기계식주차장)의 제조사 또는 보수사에 제공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